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655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4년 2월 5일
4.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II. 제안이유

- 2023. 7. 1.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과 신설 및 명칭 변경과 업무 분장 조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일부 부존재 사항 발생함.
-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지정을 명확히 하며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을 통해 심의 기능 역할 강화함.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를 당연직 위원으로 재구성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함.

III.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명시함.(안 제3조의2)
2.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지정이 아닌 호선 방식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 체제 구축함.(안 제4조제2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정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혁신과장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제1호)
4. 2023. 7. 1.자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정책·안전기획관은 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3항제1호)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협의 : 해당기관 없음
4. 기타
 - 입법예고(2023. 9. 21. ~ 10. 11.)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교육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별첨 4)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제외 통보확인서 (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별첨 6)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655호로 제출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2023. 7. 1.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

-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평가 및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에 대상과 시기, 작성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법에 규정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조례로 위임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 조직개편 사항에 맞춰 통일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단 계	내 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선정	<p>(중앙)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업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협의한 후, 부처별 양성평등 목표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24.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 대상사업 제시 → 협의 → 선정 <p>(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목표와의 관련성, 지역 성평등 지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공동 주제를 중심으로 대상과제 선정('24.6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주제를 고려하여 대상사업 발굴 → 지방위원회 심의 → 대상사업 선정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해당부서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p>해당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제출 시, 사업계획서 등 사업 설명자료 첨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24.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24.7월까지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검토의견 통보	<p>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부처(부서)에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결과를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24.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24.8월까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반영계획 제출	<p>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24.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24.9월까지 	해당 부처 (→ 여성가족부)	해당부서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반영계획 관리	<p>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24.10-12월 (지방자치단체) '24.9-12월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성인지 예산서 작성	<p>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성평등 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26년 성인지 예산서 반영 (지방자치단체) '25년 성인지 예산서 반영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설정,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소요예산 반영 등 	해당 부처	해당부서

나.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1) 성별영향평가책임관(안 제3조의2)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2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 제14조1)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르면 소속 실장·국장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규정한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각 자치구별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위원회 위원장 구성

지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서울	평생교육국장	위원중에서 호선
부산	교육국장	부교육감
인천	부위원장	부교육감
광주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	부교육감
대전	규정없음	교육국장
울산	교육국장	위원 중에서 호선
세종	규정없음	기획조정국장
경기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	제2부 교육감
강원	규정없음	부교육감
충북	부위원장	부교육감
충남	부위원장	부교육감
전북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	위원 중에서 호선
전남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	부교육감
경북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부교육감
경남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부교육감
제주	규정없음	위원 중에서 호선

2)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제2항)에 대한 검토

- 1)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일 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부위원장과 동일하게 호선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까지 겸임하도록 할 경우 독립적인 판단이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가 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 이처럼 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4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포함되어 있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비롯한 교육청소속 당연직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더욱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제3항제1호)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제3항제1호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추가하고, 정책·안전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하며, 교육혁신과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당연히 위원장으로 보하던 방식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당연직

위원중 하나로 포함시킨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정책·안전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하고 교육혁신과장을 삭제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³⁾에 따른 부서명의 변경과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성운(2180-8266)

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871호, 2023. 10. 5., 일부개정

관계 법령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5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

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8.]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74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8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제9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둔다.